

알기쉬운 特許制度와 節次

〈特許廳 指導課〉

—承 前—

⑪ 審判制度

1. 概 説

審判制度는 工業所有權을 둘러싼 紛爭을 解決하기 為하여 特許廳에서 行하는 準司法的인 性質을 가진 節次로서 一種의 裁判에 比喻될 수 있는 것이다.

審判에는 初審인 審判과 2審인 抗告審判이 있으며 3審으로서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는 3審制의 原理가 適用된다.

審判의 種類로는 初審인 審判에는 各種 權利에 대한 無効審判, 權利範圍確認審判, 通常實施權許與審判, 訂正許可審判, 分割許可審判과 商標登錄取消審判 等이 있으며, 抗告審判에는 拒絕查定不服抗告審判과 審決不服抗告審判이 있다. 그리고, 確定된 審判 또는 抗告審判의 審決에 對한 再審制度가 있다.

그런데, 1973年 12月 31日 以前에 出願되어 設定된 權利에 關한 審判은 當時의 工業所有權法의 適用을 받으며, 그 以後에 出願되어 設定된 權利에 關한 審判은 現行法의 適用을 받은 바 以下에서 說明하는 內容은 現行法에 따른 것이다.

2. 審判請求

審判은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一般的으로 利害關係人에 限하여 請求할 수 있다. 여기에서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例컨대 權利侵害을 理由로 告發된 사람은 勿論 當該權利者로부터 그 權利의 對抗을 當할 念慮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現在業務上 損害를 받았거나 後日 損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그런데, 審判에서 利害關係가 成立될 수 없다고 審決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點에 特히 留意하여야 한다.

한편 既히 請求된 審判에 關하여 利害關係를 가진 사람은 審判에 參加할 수 있다.

審判請求時 提出하여야 할 書類는

- 審判請求書 正·副本 各 1通
-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登記簿謄本 1通
-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委任狀 1通
- 手數料納付領收證
- 其他 證據物 等을 添附하여야 한다.

그리고 各種 審判請求手數料는 다음과 같다.

審判請求料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4,000원
나. 무효심판	4,000원
다. 취소심판	4,000원
라. 재심청구	5,000원
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4,000원
바. 경정허가심판	4,000원
사. 분할허가심판	4,000원
아. 경정분할허가의무효심판	4,000원
자. 취소처분신청, 통상실시권허여처분신청	7,000원
차. 심판(항고, 재심포함)에의참가신청	3,500원

抗告審判請求料

가. 권리법위 확인심판	매건 5,000원
나. 무효심판	5,000원
다. 취소심판	5,000원
라. 거절사정불복심판	5,000원
마. 재심청구	5,000원
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5,000원
사. 정정허가심판	5,000원
아. 분할허가심판	5,000원
자. 정정분할허가의무효심판	5,000원
차. 즉시항고	5,000원

3. 審判進行

審判의 請求가 있으면 그 請求書의 副本을 被請求人에게 送達하고 期間을 指定하여 答辯書 提出의 機會를 주어 그 答辯書의 提出이 있을 때에는 그 副本을 請求人에게 送達한다. 그러므로 請求書副本이나 答辯書副本은 被請求人이나 請求인이 多數이면 그 數에 該當하는 部數를 提出해야 하고, 만일 한 사람만의 代理人에게 委任되었다면 한 通牒을 提出하여도 된다.

審判은 3人の 審判官 그리고 抗告審判은 3人 또는 5人の 抗告審判官에 依하여 構成된 合議體로서 行하여진다.

審判이 請求되면 審判事件番號通知書와 그 事件을 擔當한 審判官指定通知書를 發送하게 되는 바 審判請求人 또는 審判被請求인이 그 通知를 받은 結果 當該 審判官中에 審判에 關與할 수 없는 審判官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除斥 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審判請求는 審決이 있기 前까지는 取下할 수 있으나 答辯書의 提出이 있는 경우에는 相對方의 取下同意書가 있어야 한다.

4. 各種 審判의 內容과 留意事項

다음에 各種 審判中 重要한 몇 가지를 紹介하고 特히 留意할 點을 添記한다.

1) 無効審判

一旦 設定된 權利를 一定한 法定事由에 該當

함을 理由로 審判節次에 依하여 그 効力を 遷及喪失시키는 制度이다.

利害關係人은 다음 說明하는 除斥期間이 經過하기 前까지는 無効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即, 特許가 그 出願前에 外國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發明 또는 그 發明에 依하여 그 發明이 屬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容易하게 發明할 수 있는 程度가 權利設定된 것을 理由로 한 特許無効審判의 請求는 特許權設定의 登錄日로부터 5年이 經過한 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으며, 그 外의 理由에 依한 特許無効審判은 全체든지, 다시 말해서 特許權의 消滅前後를 不問하고 請求할 수 있다. 이의한 除斥期間은 實用新案과 意匠의 경우에도 같다.

한편 商標登録의 無効審判은 公益的 規定에 違反하여 登錄되었음을 理由로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請求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例컨대 著名한 他人의 名稱, 先出願先登録된 他人의 商標, 商標權消滅日 또는 無効審決確定日로부터 1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他人의 商標, 他人의 商品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顯著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 等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것임을 理由로 하는 경우의 無効審判請求는 商標登録日로부터 5年 以內에 限하여 請求할 수 있다.

無効審判과 類似한 것으로 取消審判이 있는 바 取消審判은 商標에만 適用되고 있으며 商標登録의 取消審判에 있어 移轉에 關한 規定을 違反하였음을 理由로 한 경우에는 除斥期間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事實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後에는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 自己의 登錄商標를 他人이 使用하는 것을 默認하거나 또는 使用하게 하였을 때.

○ 故意로 指定商品에 登錄商標와 類似한 商標를 使用하거나 또는 指定商品과 類似한 商品에 登錄商標나 이와 類似한 商標를 使用하여 商品의 出處의 混同이나 品質의 誤認이 생기게 할 念慮가 있을 때.

○ 正當한 理由없이 國內에서 登錄商標를 그 指定商品에 一年以上 使用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

商標登録을 取消한다는 審決이 確定되면 그때로부터 商標權은 消滅한 것으로 본다.

特許制度와 節次풀이

2) 權利範圍確認審判

工業所有權을 中心으로 어떠한 方法 또는 物件가 積極적으로 그 權利範圍에 屬한다고거나 消極적으로 그에 屬하지 아니한다는 雙方間의 意見이 對立하는 경우 이를明白히 가려주기 為한 審判制度로서 除斥期間은 없으나 利害關係가 成立되어야 하므로 그 事實이 立證되어야 한다.

3) 訂正許可審判

特許明細書 또는 圖面中에 不完全한 것이 있을 때에는 特評請求範圍의 減縮, 誤記의 訂正, 不明瞭한 記載의 釋明에 該當하는 境遇에 限하여 審判에 依하여 訂正許可하는 制度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訂正에 依하여 特許請求의 範圍가 擴張 또는 變更되어서는 안된다.

審判官이 請求를 拒絕할 때에는 拒絕理由를 通知하고 拒絕할 理由를 發見할 수 없을 때에는 特許公報에 이를 公告하여 特許出願公告에 對한異議申請規定을 適用하여 審理하게 된다.

4) 分割許可審判

特許權者의 錯誤로 因하여 둘 以上의 發明이나의 特許出願으로 이루어져서 特許된 경우에 이를 다시 둘 以上의 特許로 分割許可를 받기 為하여 分割請求하는 制度이다.

이 경우에도 訂正許可審判에서와 같이 權利가 擴張 또는 變更되어서는 안된다.

審判第次는 訂正許可審判의 경우와 同一하다

5) 通常實施權許與審判

權利者相互間에 있어서 相對方權利의 通常實施權을 許與받고자 할 때 그 權利者가 正當한理由 없이 이에 不應하는 경우에는 審判에 依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받도록 하는 制度로서 이 審判은 그 權利設定의 登錄日로부터 3年이 經過한 경우에 限하여 請求할 수 있으며 審判에 依하여 許與받은 強制實施權에 對하여는 相對方權利者에게相當한 代價를 支拂하여야 한다.

6) 抗告審判

抗告審判은 拒絕查定不服抗告審判과 審決不服抗告審判으로 나누어지는 바 前者는 審查局에서 出願을 拒絕查定한에 對하여 出願人이不服하는 경우이고 後者는 初審인 審判에서의 審決에 對하여 當事者가不服하는 경우이다.

審判請求는 拒絕查定 또는 審決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内에 하여야 한다.

具備書類는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抗告審判請求書 正·副本各 1通과 手數料 納付領收證券提出하고 其他 書類는 初審 또는 出願書에 添付된 것을 援用할 수도 있다. 그러나 既提出書類中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再提出하여야 하며 證據物을 追加하는 경우에도 同一하다. 단, 特許廳長은 必要한 경우 援用한 書類를 再提出토록 할 수 있다. <계속>

심판청구서(심판, 항고)		
청구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국적	
대리인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피청구인	⑩ 주소	
	⑪ 국적	
	⑫ 심판사건의 표시	
⑬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을 표현할 물품명) (상표를 사용할 상품명)		
⑭ 청구의 취지 (별지사용)		
⑮ 청구의 이유 (〃)		
⑯ 증거방법		
⑰ 첨부서류 및 문건의 목록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197		청구인(대리인) ⑮
특허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청구서정부본 각 1통(부본은 피청구인 각인의 필요분)		심판청구 4,000 거절사정불복 항고 5,000원
2. 등기부등본 1통(법인체인경우)		
3. 위임장 1통(위임할 경우)		

190mm×268mm(백지 60g/m²)